

4 부채 / 채무 / 채권

4-1. 통합부채 현황

-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. 우리 사하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2020년	2021년	증감
통합자산	1,114,057	1,156,910	△42,853
통합부채	34,216	33,685	531
유동부채	11,001	9,883	1,118
장기차입부채	7,350	6,400	950
기타비유동부채	15,864	17,402	△1,538

- ▶ '21년 결산 순계기준
- ▶ 우리 사하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로 공사·공단 0개, 출자·출연기관 0개를 포함하고 있음
- ▶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」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·합산된 것임
- ▶ 통합자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- ▶ 통합부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
 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 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 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

4-2.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

-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(퇴직금, 미지급금, 보관금 등)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, '4.6. 지자체 채무 현황'의 지방채무와 '4.3. 지방공기업 부채' 중 직영기업(공기업 특별회계)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사하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2020년	2021년	증 감	비고
자산(A)	1,114,057	1,156,910	42,853	
부채(B)	34,216	33,685	△531	
자산대비부채비율 (B/A*100)	3.07	2.91	△0.16	

- ▶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
- ▶ 부 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
 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 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 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
- ▶ 자 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
4-3.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: 해당 없음

4-4. 출자·출연기관 부채 현황 : 해당 없음

4-5. 우발부채 현황

- 우발부채는 **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**를 의미하며,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우발부채 현황					
	2020	2021				
	계	계	자치단체	공사 공단	출자 출연	내부거래 제거
총 계	7	0	0	-	-	0
보증채무부담행위	7	0	0	-	-	0
BTO사업 재정지원 협약	0	0	0	-	-	0
예산외 의무부담	소 계	0	0	0	-	0
	매입확약 (부지매입, 재매입, 책임분양 등)	0	0	0	-	0
	비용부담계약 (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)	0	0	0	-	0
	기타(충도해지환급, 기타약정)	0	0	0	-	0

- ▶ 관계기관(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및 출자·출자기관)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
- ※ 채무부담행위는 우발부채 항목에서 제외, '계약상 약정' 대신 '예산외 의무부담'으로 용어 통일
- ※ 세부항목을 1)매입확약, 2)비용부담계약, 3) 기타비용부담으로 분류

4-6. 지자체 채무 현황

- 지방(자치단체)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자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.
(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). 우리 사하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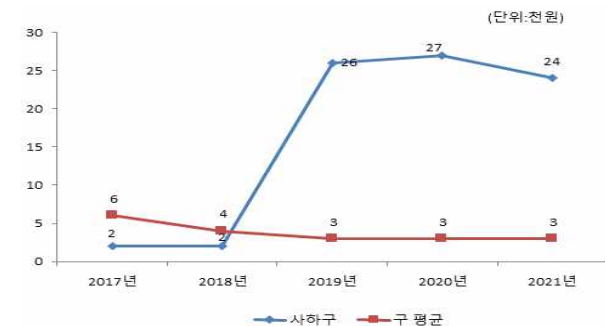
구 분	'20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'21년도 현재액 E=(A+B)
		계 (B=C-D)	발생액 (C)	소멸액 (D)	
합 계	8,300	△950	0	950	7,350
일 반 회 계	8,300	△950	0	950	7,350

❖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7	2018	2019	2020	2021
채무현황	750	600	8,450	8,300	7,350
인구수	333,301	327,791	321,004	311,757	306,003
주민 1인당채무(천원)	2	2	26	27	24

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



4-7.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7	2018	2019	2020	2021
지방채발행한도액(A)	2,400	2,600	2,900	15,400	16,700
발행액(B)	0	0	8,000	0	0
발행비율(B/A*100)	0	0	275.86	0	0

- ▶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(7.1, 행안부장관→자치단체)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*한 기본한도액(7.15, 자치단체→행안부장관)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,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
 - * 지방채정법 개정(20.4.)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
- ▶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
 - * 별도한도액 = 의무매출채권(지역개발, 도시철도) + 차환채 +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
 - ** 차환채 =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서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

4-8. 일시차입금 현황 : 해당 없음

4-9.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

-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(BTL, BTO 등)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.

우리 사하구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0년	2021년	증 감	비고
합 계	914	920	6	
BTL 임대료 및 운영비	914	920	6	

- ▶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

❖ 2021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사업명	총 사업비	계약기간	재정부담액				비고
				소계	국비	시도비	시군구비	
합계				920	0	287	633	
BTL 사업	다대도서관 건립	20,234	2010.2.1. ~ 2030.1.31	920	0	287	633	

● BTL(임대형 민자사업)이란?

-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,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,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.

● BTO(수익형 민자사업)란?

- 수익성이 있는 도로, 교량, 터널,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.
- ※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,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4-10.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· 이행현황

-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'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, '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, '22~'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❖ 2022 ~ 2026년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 : [별지] 참조